
「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」 개정고시(환경부고시 제2016-254호) 및 시험·검사 안내

I | **위해우려제품 제도 소개**

□ **위해우려제품 관련 법령**

- **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(화평법)**
 -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을 관리하는 법으로 2015년 1월 1일 시행
 - 제품 내 함유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신고 및 위해우려제품의 안전·표시 기준 준수
- **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**
 - 2015년 4월 1일 시행, 2016년 12월 30일 개정
 - 화평법 제2조 제16호, 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품목별 안전기준·표시기준 준수

□ **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제도**

-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·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제품이 출시되기 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
- 3년마다 지정된 시험분석기관에 자가검사를 의뢰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
- 자가검사를 받은 이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, 제품 포장에 자가검사 번호 및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기하여 출시, 별도의 신고 등은 필요 없음

□ **위해우려제품의 종류**

- 세정제, 방향제, 접착제, 광택제, 탈취제, 합성세제,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 등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
- 방충제, 소독제, 방부제 등과 같이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·저해하는데 사용하는 제품

[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일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]

산업부 이관 품목(8종) * 고시제정·시행('15.4.1)	신규 관리 품목(10종) * 고시 개정('16.12.30)	
일반 생활화학제품(8종)	일반 생활화학제품(6종)	살생물제품(4종)
세정제, 합성세제, 표백제, 섬유유연제, 코팅제, 접착제, 방향제, 탈취제	방충제, 김서림방지제, 물체 탈·염색제, 문신용 염료, 다림질 보조제, 인쇄용 잉크·토너	소독제, 방충제, 방부제, 살조제

II

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

□ 안전기준

- 안전기준은 제품에 함유 가능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와 국내·외 관련 규제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며, 물질별로 위해성에 따라 제품 내 사용을 금지하거나 최대 함량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
- 위해우려제품에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함유 기준치의 최대값을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됨
- 위해우려제품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사용제한 물질이 함유 되어있어서는 안됨

□ 표시기준

- 유해성분에 대한 위험문구, 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안전 정보를 제품 포장에 기재
- 위해우려제품을 생산·수입하려는 자는 「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 기준」 고시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한 후 별표의 '위해우려제품의 표시 사항 및 방법'에 따라 표시
-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[별표2]의 품목별 안전·표시기준에서 별도의 표시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표시

III

위해우려제품 관리

□ 위해우려제품 안전성 조사

- 매년 환경부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해우려제품들을 구입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·조사
- 화평법 제48조에 따라 안전성조사 불합격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, 회수, 판매금지, 개선, 시정 등 조치

□ 위해우려제품 시장모니터링

- 시장감시단을 구성하여 시중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관련 산업계의 기준 이행 촉진

IV

고시 개정 주요 내용

- CMIT/MIT를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 금지하는 등 스프레이형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강화
-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은 전성분 표시 및 다림질 보조제, 인쇄용 잉크·토너, 살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

V

고시 개정 세부 내용

- 기존 관리 품목 안전기준 강화
 - 경과조치 : 고시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적용(2017.3.29까지 기준 충족)
 - ※ 인쇄용 잉크·토너는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적용(2017.12.29까지 기준 충족)
 -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라도, 섬유유연제, 코팅제, 탈취제의 신규 항목 추가에 따른 재시험 필요
 -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있었던 CMIT/MIT의 호흡 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(모든 제형)에 사용 금지

[기존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강화 내용]

품목	제형	추가 안전기준 물질(mg/kg)	추가 사용금지 물질
섬유유연제	스프레이형	① 리모넨 10,000 이하	① MIT ② CMIT
	스프레이형 외		-
코팅제	스프레이형	① 테트라클로로에틸렌(PCE) 400 이하	① MIT ② CMIT
방향제	모든 제형	-	① MIT ② CMIT
탈취제	스프레이형	①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(DDAC) - 실내공기용 15 이하 - 의류·섬유·신발용 1,800 이하 ② 에틸렌글리콜 2,000 이하	① MIT ② CMIT ③ 1,4-디클로로벤젠
세정제, 합성세제, 표백제, 방청제, 김서림방지제, 접착제, 물체 탈·염색제, 문신용 염료, 소독제, 방충제, 방부제	스프레이형	-	① MIT ② CMIT

□ 표시기준 개선

- 경과조치 : 고시 후 18개월 경과한 날(2018.6.30)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
-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, 기능,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
- 피부 과민성 있는 사용자가 제품 사용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,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리지 유발 향료를 세제류* 제품에 0.01 % 이상 쓰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명칭(화학물질명)과 기능 표시
 - * 세정제·합성세제·표백제·섬유유연제
- 살생물질 함유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제품 포장에 '저위해성', '무해한', '자연친화적인' 등 유사한 문구 사용 금지

□ 신규 관리 품목(3종) 지정

- 인쇄용 잉크·토너, 다림질보조제, 살조제 3가지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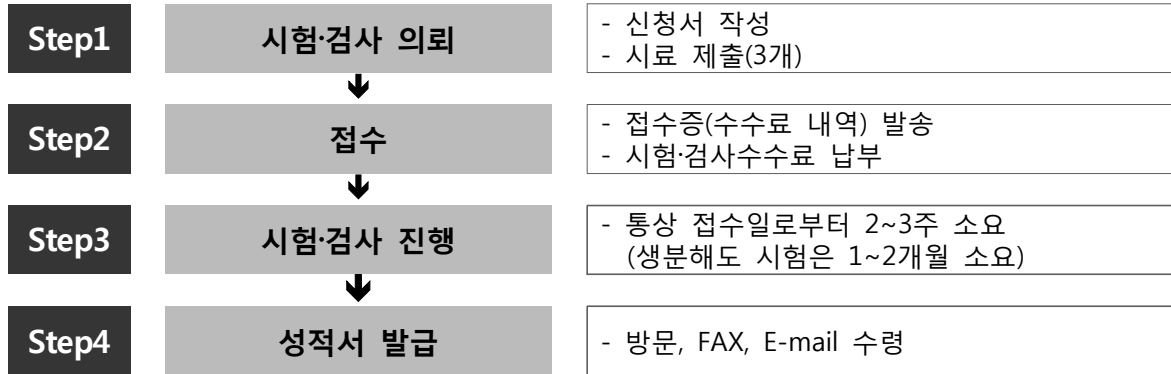
[신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]

품목	제형	안전기준물질(mg/kg)	사용 금지 물질	표시물질
인쇄용 잉크·토너	토너	① 벤젠 5 이하	① 카드뮴 ② 비소 ③ 납 ④ 6가크로뮴	-
	잉크	① 벤젠 17 이하	⑤ 수은 ⑥ 아조염료	
다림질 보조제	스프 레이형	① IPBC 10 mg/kg 이하 ② 아이소프로판올 30 mg/kg 이하	① PHMG ② PGH ③ PHMB ④ MIT ⑤ CMIT ⑥ 아세트알데하이드 ⑦ 폼알데하이드 ⑧ 글루타르알데하이드	① 아세톤
	그 외 제형		① 아세트알데하이드 ② 폼알데하이드 ③ 글루타르알데하이드	
살조제	스프 레이형	①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600 이하 ② 클로로포름 100 이하 ③ 이산화염소 1,000 이하 ④ 과아세트산 3,000 이하	① PHMG ② PGH ③ PHMB ④ MIT ⑤ CMIT	① 2-부톡시에탄올 ② 아세트알데하이드 ③ 폼알데하이드
	그 외 제형	①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600 이하 ② 클로로포름 300 이하	-	

VI

시험 안내

□ 시험검사 절차



※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며,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음

□ 위해우려제품 검사 항목 및 수수료

○ 개정고시에 따른 추가 항목 및 수수료

품목	시험 항목	수수료(원)
섬유유연제	리모넨	100,000
코팅제(스프레이형)	테트라클로로에틸렌(PCE)	100,000
탈취제(스프레이형)	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(DDAC)	100,000
	에틸렌글리콜	100,000

○ 그 외 시험 가능 물질(제한물질, 표시물질) 및 수수료

구분	제한물질	표시물질
시험가능항목	TBT, TPT, 아조염료, 형광증백제, 염화비닐, 테트라클로로에틸렌, 디클로로메탄,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뷰틸 에테르, 카드뮴, 비소, 납, 6가 크로뮴, 수은, 니켈, 브롬화 에틸, 톨루엔-2,4-디이소시아네이트, 아크릴로니트릴, CMIT, MIT, 아세트알데하이드, 폼알데하이드, 글루타르알데하이드	DEHP, 이소프로필벤젠, 2-부톡시에탄올, P-클로로아닐린, 톨루엔, 자일렌, P-자일렌, 에틸벤젠, 디클로로브로모메탄, 1,4-다이클로로벤젠, 1,4-다이옥세인, 산화 프로필렌, 프로필렌 글리콜, 에틸렌 글리콜, 나프탈렌, IPBC, 구리, 아세트산 비닐, 사이클로헥세인, TBT, 아세톤, 시트르산, 메탄올, 아세트알데하이드, 폼알데하이드

※ 수수료 : 항목별 30,000원 ~ 100,000원

○ 품목별 안전기준 수수료

중분류	소분류		검사기간 ¹⁾	수수료(원)	
				신규	추가 ²⁾
세제류	세정제	세정제	10~15일	280,000	190,000
		스티커	10~15일	460,000	370,000
	합성세제	합성세제	40일	1,186,000	150,000
	표백제	표백제	10~15일	180,000	120,000
	섬유유연제	섬유유연제	10~15일	940,000	280,000
코팅, 접착제류	코팅제	광택용(일반형)	10~15일	360,000	360,000
		광택용(스프레이형)	10~15일	390,000	390,000
		표면보호코팅용 등(일반형)	10~15일	410,000	410,000
		표면보호코팅용 등(스프레이형)	10~15일	440,000	440,000
	방청제	방청제	10~15일	430,000	-
	김서림방지제	김서림방지제	10~15일	430,000	-
	접착제	일반형	10~15일	500,000	440,000
		가발용	10~15일	440,000	370,000
		속눈썹용	10~15일	460,000	320,000
		네일용	10~15일	380,000	380,000
다림질 보조제	다림질 보조제	10~15일	120,000	-	
방향제류	방향제	방향제	10~15일	320,000	200,000
	탈취제	일반형	10~15일	450,000	330,000
		스프레이형	10~15일	820,000	700,000
		미생물	10~15일	400,000	320,000
염료·염색류	물체탈·염색제	물체탈·염색제	10~15일	130,000	-
	인쇄용 잉크·토너	인쇄용 잉크·토너	10~15일	100,000	-
살생물제류	소독제	일반형, 스프레이형	10~15일	230,000	-
	방충제	스프레이형(리필형 포함)	10~15일	200,000	-
	방부제	방부제	10~15일	280,000	-
	살조제	일반형	10~15일	150,000	-
스프레이형		10~15일	230,000	-	

1) : 근무일(Working day) 기준임

2) : 기존 KC 인증제품

※ 용기강도, 누수 및 중량 등 수수료 : 11,000~31,000원 추가

□ 문의사항

담당자	담당 내용	연락처	e-mail
고객지원팀(CS팀)	시험·검사 접수 문의	02-2102-2500	
조진범 책임연구원	위해우려제품 상담 전반	02-2102-2682	74cjb@kcl.re.kr
손성희 선임연구원	코팅·접착제류, 방향제류, 염료·염색류, 살생물제류	02-2102-2681	ksongsong@kcl.re.kr
김송희 선임연구원	세제류	02-2102-2599	ssonglux@kcl.re.kr
이송지 주임연구원	표시사항 상담(고시기준)	02-2102-2679	sjlee0530@kcl.re.kr

<KCL 가산 시험연구동(본원) 오시는 길>

[08503]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(가산동)



지하철을 이용하실 경우

1호선 :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7번 출구 50m 앞 도로 → 우측 150m → 길 건너편 삼거리 코너

7호선 :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6번 출구 150m 직진 → 길 건너 삼거리 코너

버스를 이용하실 경우

지선 : 5012, 5528, 5537, 6621, 6634

간선 : 571 이용